

## 2026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

### 제08조(이용계약내용)

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**1. 계약목적** -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-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,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.

-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 급여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**2. 계약기간** -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-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,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.

### **3. 계약의 해제**

- 이용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이용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용자(보호자)에게 15일전에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**4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**

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이용자의 급여비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-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
-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

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등의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#### **5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**

- 일반 :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%
- 감경, 의료 :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9%, 6%
- 기초 :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0%

#### **6. 기타비용**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
### **제09조 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)**

이용료 등 비용 및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-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 -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  -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  -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
  - 이용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경우
- ②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(보호자)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.

## 제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

### 제10조 (서비스내용)

①방문요양 :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(식사하기, 화장실이 용하기, 옷 갈아입기, 머리감기 등)및 가사, 일상생활지원, 인지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.

| 구분          | 서비스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체활동지원      | 세면도움, 구강관리, 식사도움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머리감기기, 목욕도움, 화장실이용하기, 이동도움, 체위변경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 |
|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| 취사,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지활동지원      | 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서지원        |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도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 | 행동변화, 응급상황 대처 등,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|

②방문목욕 :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이동목욕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③주.야간보호 : 센터 차량을 이용한 수급자 가정에서부터 송영을 시작으로 수급자를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강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,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간호서비스를 통한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
- 신체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신체활동지원
-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
- 인지활동지원 및 정서지원
- 여가활동지원

### 제11조 (비용의 부담)

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#### ① 월 이용료 (2026.1월기준)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.

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등급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| 1,208,900 | 676,320 |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구 분     | 금액(원)  | 구 분     | 금액(원)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30분 이상  | 17,450 | 150분 이상 | 50,640 |
| 60분 이상  | 25,320 | 180분 이상 | 57,020 |
| 90분 이상  | 34,120 | 210분 이상 | 63,530 |
| 120분 이상 | 43,430 | 240분 이상 | 70,080 |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 | 88,990 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 | 80,230 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| 50,100 |

② 방문요양, 방문목욕 본인부담금

- 일반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감경,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%. 6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0%

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

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등급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| 1,208,900 | 676,320 |

< 비급여 항목 및 비용 >

| 비급여 항목 | 금 액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식사 재료비 | 1식 4,000              |
| 간식비    | 1일 2회:1,000           |
| 이 미용비  | 시설내:무료, 미용실 이용 시 금액산정 |
| 기타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[2026년 급여비용 안내]

| 등급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수가     | 본인부담금15%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3시간이상<br>~6시간 미만    | 1등급    | 41,820 | 6,273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38,720 | 5,808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35,740 | 5,361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34,120 | 5,118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32,490 | 4,874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32,490 | 4,874    |
| 6시간 이상<br>~8시간 미만   | 1등급    | 56,060 | 8,409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51,930 | 7,79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47,940 | 7,191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46,300 | 6,945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44,650 | 6,698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44,650 | 6,698    |
| 8시간 이상<br>~10시간 미만  | 1등급    | 69,730 | 10,460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64,590 | 9,689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59,640 | 8,946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58,010 | 8,702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56,360 | 8,454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6,360 | 8,454    |
| 10시간 이상<br>~13시간 이하 | 1등급    | 76,820 | 11,523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71,160 | 10,674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65,750 | 9,863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64,090 | 9,614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62,460 | 9,369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6,360 | 8,454    |
| 13시간 초과             | 1등급    | 80,060 | 12,009   |
|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76,310 | 11,447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70,500 | 10,57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68,860 | 10,329   |
|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67,240 | 10,086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6,360 | 8,454    |

③ 주.야간보호 본인부담금

- 일반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감경,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%. 6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0%